

〈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세칙 〉

제 정 2022. 01. 1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본 시행세칙은 심판위원회 및 심판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.

제2장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

제3조(소위원회의 구성) ① 본 위원회는 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배정 소위원회

가. 직무: 각종 대회의 심판 배정

나. 인원: 본 위원회 위원 약간명

2. 교육 소위원회

가. 직무: 양성교육, 보수교육 등 심판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계획 수립

나. 인원: 본 위원회 위원 또는 전임 강사로 구성된 약간인

3. 평가 소위원회

가. 직무: 심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보고서 검토

나. 인원: 본 위원회 위원 약간인

② 소위원회간 위원 겸직은 지양한다.

제3장 심판의 구분 및 교육

제4조(심판의 정의) 심판은 협회가 주최하는 자격과정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연도 심판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자 말한다.

제5조(심판의 구분) ① 심판은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.

1. 3급 심판
2. 2급 심판
3. 1급 심판

② 심판은 주심으로 분류되며 그 직능은 경기규칙에 의한다.

③ 심판의 구분 및 자격부여에 대한 사항은 별지1로 규정한다.

제6조 (심판의 관장 경기) ① 심판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관장할 수 있는 경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3급 심판: 장애인당구의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장애인당구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2. 2급 심판: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3. 1급 심판: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장애인당구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② 상위 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의 심판 경기를 관장할 수 있다.

제7조 (심판교육 및 자격부여) ① 심판교육 및 자격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협회에 있다.

② 시도협회는 필요시 협회의 위임을 받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자격증을 발급할 수는 없으며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8조(3급 심판교육 및 자격부여) 3급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.
2. 교육진행
 - 가. 교육내용: 이론 및 실기
 - 나. 교육기간: 3일

- 다. 세부내용: 위 가, 나 항목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에 따름
- 3. 자격평가: 이론 및 실기
- 4. 자격부여: 이론 및 실기평가에서 각각 60%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합격한 자

제9조 (심판교육) 협회는 심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, 연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.

제10조 (심판강사의 구분, 직무 및 임기) ① 심판의 교육을 위하여 심판강사를 두며, 심판강사는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전임 강사
 - 가. 심판강사의 선발, 교육, 관리 및 배정
 - 나. 연간 교육 계획 및 구성
 - 다. 교육 정책 및 방향 연구
 - 라. 시·도협회 보수교육 주강사
 - 2. 실기강사
 - 가. 신입 실기강사 교육
 - 나. 협회가 주관하는 심판 교육의 실기 교육
 - 다. 각급 심판 실기평가 주관
 - 3. 초빙강사
 - 가. 협회 가 주관하는 교육의 특정과목 교육
 - 나. 심판의 전문성, 인성 등에 필요한 교육
- ② 심판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(심판 강사의 자격요건 및 승인) 심판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임강사: 1급 강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자
- 2. 실기강사: 실기강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본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가 승인한 자
 - 가. 1급 심판 3년 또는 2급 심판 7년 이상 활동한 자
- 3. 초빙강사: 전임강사가 추천하고 본 위원회가 승인한 자로서, 연간 교육 계

획에 의거하여 교육별 필요 교육 발생 시 선임하여 운영한다.

제4장 심판의 운영 등

제12조 (심판의 등록) ① 자격을 취득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활동을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심판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최근 2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미등록 심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심판의 배정) 전국장애인당구대회 및 기타 대회의 심판 배정은 본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협회가 최종 결정한다.

제14조 (심판의 권한) 심판은 경기 중 경기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갖는다.

제15조 (심판의 의무) 심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
2.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
3.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

제16조 (심판 등의 상벌) 본 위원회는 심판, 심판강사, 기타 심판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및 징계를 건의하고 징계를 심의하며 심판 배정을 금지할 수 있다.

1. 포상 건의 대상: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된 자
2. 징계 건의: 경기조작, 심판매수, 금전비리, 성희롱, 기타 협회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사항
3. 징계 심의: 위 2호의 징계 사항 외 심판에 대한 모든 징계 사항

4. 징계 기준 : 협회 징계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.

제17조 (심판자격의 결격사유 및 활동제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, 심판위원, 심판강사가 될 수 없다.

1. 협회 등록 지도자로 등록된 자는 등록기간 동안 심판활동을 할 수 없다.
2. 협회 임원(시·도협회 임원을 포함)은 심판활동을 할 수 없다.

제18조 (심판의 자격소멸) ①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의 박탈,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심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, 자격의 소멸은 협회가 결정한다.

②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로 5년 연속하여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심판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.

제19조 (2급 심판 승급)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2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.

1. 3급 심판으로 최근 2년 연속 등록한 자
 2. 3급 심판 중 최근 2년간 주심으로 4회 이상 활동한 자
- ② 2급 심판 자격증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2급 심판 승급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.
- ③ 당해연도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없다.
- ④ 2급 심판 승급심사기준은 별지4와 같다.

제20조 (1급 심판 승급)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.

1. 2급 심판으로 최근 2년 연속 등록한 자
 2. 2급 심판 중 최근 2년간 주심으로 5회 이상 활동한 자
- ② 1급 심판 자격증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1급 심판 승급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.
- ③ 당해연도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급심사에 지원할 수 없다.

④ 1급 심판 승급심사 기준은 별지5와 같다.

제21조 (특례 승급심사 대상) 심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이전급 승급(자격취득) 시 상위 10%이내의 인원은 승급에 필요한 해당 경기 수를 충족할 경우 1년 경과 후라도 승급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제22조 (심판의 수당) 심판의 수당은 본 위원회 건의에 의해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.

제23조 (심판의 보호) 심판은 심판활동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, 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.

1. 경기장 도착시간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,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
2. 경기단체 또는, 대회 주최 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,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항변할 권리

제24조 (상업적 권리) ① 공식 심판복을 활용한 스폰서 광고 행위 및 상업적 행위는 협회가 최종 결정한다.

② 기타 협회 등록 심판의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하여 협회의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부 칙(2022. 01. 18.)

제1조(승인) 본 규정은 2022년 01월 18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.

제2조(시행) 본 규정은 2022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11조에 따른 강사요건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조항의 해석)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